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專門委員 檢討報告書

1.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2. 제출 및 회부일자

가. 제출일자 : 2006년 8월 28일

나. 회부일자 : 2006년 8월 28일

3.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과 「지방재정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 및 운영상 미흡한 점을 보완·정비하려는 것임.

4. 주요내용

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안 제1조, 제2조, 제5조)

나.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 조문 개정(안 제4조)

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 변경(안 제9조~제14조)

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촉위원에 대한 수당 지급 근거(안 제17조)

5. 검토의견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의 제정과 「지방재정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보완하는 것으로
- 통합관리기금의 사용용도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9조에 의한 지역발전협력기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구성·기능·위원장의 직무·임기·회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완한 것으로 이견없음.

붙임 :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